

# 관리단체운영 규정

2021. 9. 27.



**제1조(근거 및 목적)** 이 규정은 전국규모연맹체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전국규모연맹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대한체조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전국규모연맹체에만 적용한다.

**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** 협회는 전국규모연맹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전국규모연맹체에 통지한다.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그 밖의 주요사항

**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**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전국규모연맹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협회가 해당 전국규모연맹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해당 전국규모연맹체 임원·선수 및 기타 관계자(이하 “전국규모연맹체 관계자”라 한다)는 전국규모연맹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전국규모연맹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협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전국규모연맹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규모연맹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.

**제5조(전국규모연맹체 관계자의 의무 등)**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전국규모연맹체의 관계자는 협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협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협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전국규모연맹체 관계자는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·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협회는 협회의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전국규모연맹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처리 한다.

④ 전국규모연맹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전국규모연맹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 6 조(관리위원회의 설치)** ① 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전국규모연맹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협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**제 7 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전국규모연맹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3. 법제 · 상별 기능에 관한 사항
4. 사무처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
5. 전국규모연맹체 정관(또는 규약)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

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임원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
**제 8 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
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0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, 스포츠공정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 ·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
**제 9 조(준용)**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1. 09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